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



Contents

I. 총칙

4

- 1 사업 목적 4
- 2 추진근거 5
- 3 용어 정의 5
- 4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6
- 5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8
- 6 사업 운영 참고사항 9

II. 일손부족일자리 개요

10

- 1 기업 규모 10
- 2 일손부족 업종 11
- 참고** 산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12





III. 지원대상 중장년 개요

14

- 1 연령 및 국적 14
- 2 훈련·일경험 등 수료 후 일손부족일자리 취업 15
- 3 근로조건 15
- 4 근속요건 16

IV. 인센티브의 신청 및 지급

17

- 1 신청서 접수 기간 17
- 2 (중장년)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19
- 3 (고용센터) 인센티브 요건 심사·지급 21
- 4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23
- FAQ 24

V. 별첨 및 서식

27

- 별첨 28
- 서식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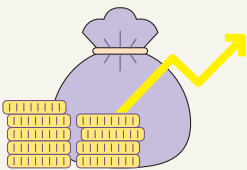
1. 총칙

1 사업 목적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약칭: 일손 인센티브)는 중장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26년 시범 사업으로,
 - 적극적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일손부족일자리에 재취업 의지가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을 매칭, 장기근속을 유도
 - ▶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지원
-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여 중단없이 6개월·12개월 근속한 중장년에게 각 180만원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본 지침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의 지원대상·내용·절차, 주체별 역할 등 사업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

예산 범위 내 지급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 용어 정의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일손부족 업종에 역량을 갖춘 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중장년 지원사업

신청중장년

일손 인센티브의 신청대상이 되는 중장년

승인중장년

일손 인센티브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중장년

대상기업

일손 인센티브의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신청중장년이 취업한 사업체

인센티브

대상기업에 취업한 중장년이 6·12개월 이상 근속 시 중장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1차 인센티브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

2차 인센티브 12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

4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고용노동부(본부)

- 일손 인센티브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일손 인센티브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지침 제·개정
- 기타 일손 인센티브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7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담당

- 일손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장년 상담
- 기업과 중장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 신청중장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승인중장년의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승인중장년에 대한 지도·점검
- 본 지침 및 기타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중장년

- 인센티브 접수기간 내 신청
- 고용센터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협조
- 기타 본 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5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6

사업 운영 참고사항

- '26년도 시범 추진인원 1,000명으로 해당 인원 달성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가 있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 일부 변경 가능
 - * 변경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공개
- 동일기간·동일목적의 타 인센티브(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근속 인센티브*)와는 중복지원 불가
 - * 구(舊)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 다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그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 가능
 - 고용사업주 지원금은 무관
 - ◆ 신청자의 중복지원 여부는 '바로원 시스템'에서 확인
- 본 지침의 최종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음



II. 일손부족일자리 개요

1 기업 규모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중장년 취업일의 직전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의 판단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운영매뉴얼을 준용

-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여부 판단 시 인센티브 신청중장년은 포함하지 않음
- » 다만, 중장년 취업일이 사업장 성립연도에 있을 경우, 직전연도 말이 아닌 취업일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우선지원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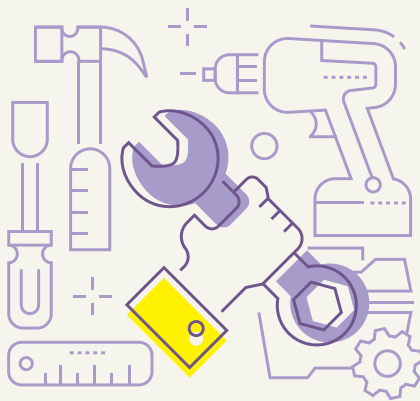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준용[별첨2]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이외의 조건에 해당 시 신청중장년이 사업주 협조를 받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2

일손부족 업종

-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H.운수 및 창고업’인 기업[별첨 1]은 모두 해당

*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산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24~'25)

미충원 인원

사업체에서 적극 구인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 × 100

산업별 미충원 현황

구분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24 상	119천명	8.3%
'24 하	122천명	9.6%
'25 상	108천명	7.7%
'25 하	101천명	8.4%

산업별 미충원 인원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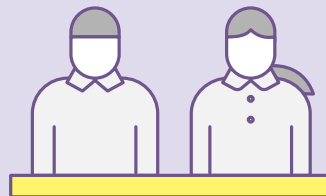
구분	상위 업종
'24 상	제조업(37천명) > 운수 및 창고업(17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천명) > 도매 및 소매업(10천명)
'24 하	제조업(32천명) > 운수 및 창고업(20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천명) > 도매 및 소매업(12천명)
'25 상	제조업(27천명) > 운수 및 창고업(15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천명) > 도매 및 소매업(11천명)
'25 하	제조업(25천명) > 운수 및 창고업(13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천명) > 도매 및 소매업(11천명)

산업별 미충원을 상위 업종

구분	상위 업종
'24 상	운수 및 창고업(29.1%) > 제조업(20.3%) > 정보통신업(14.8%)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4%)
'24 하	운수 및 창고업(34.8%) > 정보통신업(19.3%) > 제조업(18.3%)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7%)
'25 상	운수 및 창고업(27.7%) > 정보통신업(17.3%) > 제조업(16.3%)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2.8%)
'25 하	운수 및 창고업(24.2%) > 제조업(16.0%) > 정보통신업(14.4%)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3%)

● 4기 연속 산업별 미충원을 및 미충원인원 1만명 이상 중 상위 2개 업종

▶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III. 지원대상 중장년 개요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령 및 국적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 제외

- ✓ 취업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취업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다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중장년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이직'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 1년 이내의 경우만 해당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예시)

-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로서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 그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장년
 - 일손 인센티브 부정청구로 처분 받은 중장년은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일손부족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

훈련·일경험 등 수료 후 일손부족일자리 취업

'25~'26년 중 중장년 직업훈련 및 일경험사업*을 수료한 후 일손부족일자리
취업해야 함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취업일 현재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일용근로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원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경우

3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취업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4

근속요건

- '26.1.1. 이후 6개월 이상 근속
 - 근속기간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25년 취업자도 '26.1.1.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인센티브 신청 가능

근속 관련 안내 **유의사항**

- ☑ 근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 원칙적으로 휴업·휴직 등의 사유가 신고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속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봄
- ☑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양수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확인서[서식3]'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근속으로 인정함



Ⅳ. 인센티브의 신청 및 지급

1 신청서 접수 기간

1차 인센티브

- 신청중장년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후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2차 인센티브 신청 불가
 - '25년 취업자는 '26.1.1. 이후부터 기산하여 근속 여부 산정

2차 인센티브

- 1차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승인중장년에 한해
 -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속 후 12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25년 취업자는 '26.1.1. 이후부터 기산하여 근속 여부 산정

예산 소진 시

- ≫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서 접수기간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참여신청 가능 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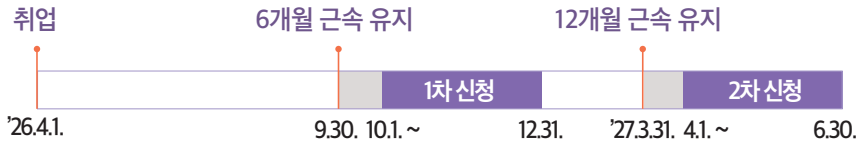
'26.4.1. 취업한 중장년

취업일 기준 근속 6개월이 되는 날('26.9.30.)이 속한 달의 익월인 '26.10.1.부터 3개월 이내인 '26.12.31.까지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

예시

1차를 지급받은 승인중장년에 한해

근속 12개월이 되는 날('27.3.31.)이 속한 달의 익월인 '27.4.1.부터 3개월 이내인 '27.6.30.까지 2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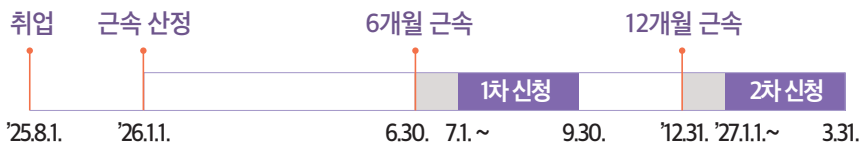
'25.8.1. 취업한 중장년

'25.8.1. 취업했어도 근속 산정은 '26.1.1.부터 시작하며, 근속 6개월이 되는 날 ('26.6.30.)이 속한 달의 익월인 '26.7.1.부터 3개월 이내인 '26.9.30.까지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

예시

1차를 지급받은 승인중장년에 한해

근속 12개월이 되는 날('26.12.31.)이 속한 달의 익월인 '27.1.1.부터 3개월 이내인 '27.3.31.까지 2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 가능



2

(중장년)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1차 인센티브

- 중장년은 취업하고 최소근속 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3개월 이내 1차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해야 함
 - * 펌뱅킹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고용24 회원가입 필수
- 7개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급 신청[서식 1]
 - ◆ 다만, 2026년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접수 필요(원거리 신청자는 접수처로 등기우편, 팩스 등 접수 가능하나,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처리)
 - ◆ 추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도 파일로 첨부



제출서류

-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차 지급 신청서」(서식 1)
- 2 중장년 확인서(서식 1-1)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1-2)
- 4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5 근속 증빙자료(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중 선택) 1부
- 6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 7 본인 명의 통장(인터넷 발급 포함) 사본 1부



2차 인센티브

- 12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지급 신청
- 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제외[서식 2]

제출서류

-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2차 지급 신청서」(서식 2)
- 2 근속 증빙자료(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1차 인센티브 신청일 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중 선택) 1부



3

(고용센터) 인센티브 지급요건 심사·지급

지급요건 검토

선착순 접수·검토

접수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 지급요건을 검토

접수 마감

신청중장년이 지방청 고용센터별 배정 인원에 도달한 경우, 해당 권역 내 일손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마감됨

- 다만, 요건 미충족자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실제 인센티브 지급인원 도달 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신청 접수 예시

대기자는 “지역별 지원목표 인원까지 신청이 마감되어 요건 미충족자 발생 시에만 추가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후 해당 문구가 기재된 대기자 명단에 서명하고 선착순으로 등록함

적격여부 검토

고용센터는 접수된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지체 없이 검토함

자료 요청

고용센터는 신청중장년의 지원요건을 지체 없이 검토하되,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중장년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중장년이 2회 이상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수 있음

승인 및 인센티브 지급

승인 결정

고용센터는 신청중장년의 인센티브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 결정 시 신청중장년에게 펌뱅킹을 통해 1차 인센티브를 지급함

승인 결정의 통보

고용센터는 승인(또는 불승인) 시 신청중장년에게 안내하고, 승인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같음, 불승인은 문서로 통보

지급방법

인센티브는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중장년의 계좌로 지급

부정청구 예방 활동

고용센터는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보완요구하고,
- 부정청구 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다른 지원금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해야 함



4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승인중장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 4)

-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승인중장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 4-1)

중장년 협조

고용센터는 승인중장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승인중장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승인중장년은 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상기업

고용센터의 신청, 승인중장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Q1.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처우개선수당은 6개월 미만자, 2025년 이전 취업자 등 재직자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음

>> 중복지원이 금지되는 동일기간·동일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취업·근속 인센티브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지역일자리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Q2.

일경험사업을 수료한 후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해야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형(중장년 경력지원제 시작 시 취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됩니다. 근로계약형이라는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Q2-1.

근로계약형도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면, 3개월간 근로계약형으로 근무한 것도 일손 인센티브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3개월간 근로계약형으로 근무한 것도 인센티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3.

2026년 1차 인센티브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

>> 2026년 1차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는 고용24를 통한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등은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처리될 수 있으며,

별첨 3 지역별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및 서식



별첨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운수·창고업 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1차 기준)	
대분류	중분류
C.제조업 (10~34)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운수 및 창고업 (49~5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별첨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 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별첨 3 고용센터(7개 지방고용노동청) 사업수행 관할

고용센터	관할구역	
	광역 권역	광역권역 내 지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서울시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의 관할 구역
경기청 수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경기도 지역* (일부 제외)	『경기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의 관할 구역
충부청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충부청,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부산시, 울산시, 경남	『부산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의 관할 구역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대구시, 경북	『대구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의 관할 구역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광주시, 제주도, 전남, 전북	『광주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의 관할 구역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	『대전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서산지청』의 관할 구역

* (경기청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양평군, 인천시, 여주시, 하남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서식 목록

서식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1차) 33
서식 1-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확인서 34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중장년용) 35
참 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36
서식 2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2차) 37
서식 3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38
서식 4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모니터링 39
서식 4-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점검표 40
서식 5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차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41

서식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1차)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지급 신청서(1차)

□ 인센티브 지급결정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운수 및 창고업 * 위 업종요건은 둘 중 하나 충족하면 됨		
사업규모	<input type="checkbox"/> ① 피보험자수 5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위 규모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요건	취업일	20년 월 일		
	주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월 급 여 원
	근속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훈련 및 일 경험 (개시일 / 수료일)	<input type="checkbox"/>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20년 월 일 / 20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20년 월 일 / 20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경력지원제(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은행 _____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매뉴얼」에 따라 위와 같이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차 지급을 신청합니다.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는 고용보험상 실제 기업 업종규모 및 중장년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1부.(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 2. 중장년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체내역 등 4.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5. 통장사본 1부.
-------------	--

서식 1-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확인서

본인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확인서			
지원 제외 중장년		해당 없음	해당 있음
①	취업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 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취업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해당없음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파견, 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취업한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신청중장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중장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기타 등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동일기간·동일목적의 타 인센티브(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근속인센티브(구(舊)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등)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본인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의 지원요건 및 제외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상단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신청중장년	(서명 또는 인)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중장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중장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대상기업에 취업한 중장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중장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안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중장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서명 또는 인)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주)○○○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____ 일 ~ 당월 ____ 일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2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2차)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2차)

□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 사실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

신청인 정보	성 명		전 화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이 메 일	
	주 소			

사업장 정보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주 소			
	업 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운수 및 창고업 * 위 업종요건은 둘 중 하나 충족하면 됨		
	사 업 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① 피보험자수 5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위 규모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요건	취 업 일	20 년 월 일		
	근 속 기 간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속 중임		

※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은행 _____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에 따라 12개월 근속에 대한 2차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원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센티브 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2개월 근속증빙 자료(신청일 전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1차 인센티브 신청 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서식 4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종장년 모니터링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종장년 모니터링 서식					
■ 종장년 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 신청 및 지급 현황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 결정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 결정일	2차 지원금 지급일
■ 대상 기업 (단위: 천원, %)					
사업장명	대표자명	취업일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	
■ 주요 점검 내용					
모니터링 사항			모니터링 결과		
○ 지원요건 적격 여부 - 특히, 지원제외 요건 해당 여부, 근로조건 등 재확인					
○ 고용보험가입 유지 여부 - 근속요건 조건에 대하여 고용보험 내용 수정여부 확인					
○ 기타 관계 법령, 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점검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점검표					
■ 중장년 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 신청 및 지급 현황					
1차 지원금 신청일	1차 지원금 지급 결정일	1차 지원금 지급일	2차 지원금 신청일	2차 지원금 지급 결정일	2차 지원금 지급일
■ 대상 기업 (단위: 천원, %)					
사업장명	대표자명	취업일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	
■ 주요 점검 내용					
모니터링 사항			모니터링 결과		
○ 지원요건 적격 여부 - 특히, 지원 제외 요건 해당 여부, 근로조건 등 재확인					
○ 고용보험가입 유지 여부 - 근속요건 조건에 대하여 고용보험 내용 수정여부 확인					
○ 기타 관계 법령, 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확인자(중장년)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소속: _____ 직위 또는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운영 매뉴얼**

발 행 일 2026년 4월

발 행 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디 자 인 초이스컴(주) TEL 070-4245-9599

